

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. 11. 27 선고 2023가단133867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대한민국

피고A

변론 종결2024. 11. 6.

판결 선고2024. 11. 27.

주 문

1. 피고와 B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금원에 관하여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211,900,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211,9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. 5. 29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판사김태은

별지